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나. 의안번호: 제2261호
다. 제출일자: 2024.10.16.
라. 회부일자: 2024.10.18.

2. 제 안 사 유

-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3.19.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다.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구성위원 수 변경(안 제2조).
라. 위원회 소관사무에 건강피해조사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피해 조사분과위원회 신설(안 제5조).

마. 명칭변경(안 제8조, 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별균형 고려.

※ (반영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안 제5조제2항).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8.8.~8.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¹⁾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조항	조 제목	내 용
제명		· (기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사항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에 따른 명칭 및 구성 위원 수 변경
제3조	위원 해촉	·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5조	건강피해조사 분과위원회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조정·재정·중재 위원회	· 조정위원회(법 제47조제1항), 재정위원회(법 제57조제1항) 중재위원회(법 제68조제1항)의 개의·의결·회의 소집 방법 규정
제7조	회부 절차 등	·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안건 회부 절차 및 검토 사항
제8조	전문위원 등	·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 구성·운영
제9조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서기·조사관 지정
제10조	수수료	· 수수료 관련 규정
제11조	수당 등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규정
제12조	운영세칙	· 조례 규정 이외의 필요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1) 법률 제20385호, 2024.3.19. 공포, 2025.1.1. 시행

나. 상위법 개정 현황

-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와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등²⁾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기존 제도를 통합·운영 하도록 하였음.

〈환경오염 및 건강상·재산상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



다. 검토의견

- 조례 제명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³⁾ 및 제25조제2항⁴⁾에 따라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 및 회의 개최 관련 규정이 빠져 있는바, 위원회가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법 제47조제1항)·재정위원회(법 제57조제1항)·중재위원회(법 제68조제1항)의 개의·의결·회의 소집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부 절차, 전문위원, 사무 처리, 수수료, 수당, 운영세칙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상위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7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제출한 것은 조례 시행일⁵⁾에 미뤄 적절한 행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칙 제정 등)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제327회 정례회 안건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예정